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4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신영대·박홍배·홍기원

전재수 · 이해민 · 김정호

윤준병 • 한민수 • 강준현

김기표 • 염태영 • 박성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평균인 1.51명보다 약 0.75%포인트 낮으며,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.

또한,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'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'이라는 답변이 93.7%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%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5항 중 "제59조의4제4항"을 "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 본문 중 "제59조의4제9항"을 "제59조의4제10항"으로 한다.

제59조의4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까지의 규정을"을 "제4항까지를"로, "제3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4항까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까지의 규정"을 "제5항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제1호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9항)제1호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9항까지의 규정"을 "제10항까지"로 한다.

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)의 육아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,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"제3항까지"를 "제4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 서 중 "제59조의4제4항제2호"를 "제59조의4제5항제2호"로, "제59조의4 제4항"을 "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제8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9조의4제4항"을 "제59조의4제 5항"으로 한다.

제175조제1항 중 "제59조의4제4항"을 "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용품 구입비의 특별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5조의4제2항제2호 중 "제59조의4제4항"을 "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 -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제9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10항"으로 한다.

제58조제3항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4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4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4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4항"을 각각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제88조의4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4 항"을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제122조의3제1항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제9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10항"으로 한다.

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6조의2제1항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제4항제2호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5항제2호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	제34조(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
입) ① ~ ④ (생 략)	입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	5
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	
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	
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	
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	
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	
금액(<u>제59조의4제4항</u> 에 따라	<u>제59조의4제5항</u>
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	
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	
제외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	
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	
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	
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	
입할 수 있다.	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제54조(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)	제54조(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70조제1항, 제70조의2제2	2
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	
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	

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(分)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. 다만,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
③ (생략)
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

③ (생략)

<신 설>

<u>④</u> (생 략)

 ⑤
 제1항부터
 제3항까지의
 규

 정을
 적용할
 때
 과세기간
 종료

 - <u>제59조의4제10항</u> -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)의 육아를 위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,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 -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 - <u>⑥</u> -----<u>제4항까지를</u>----

일 이전에 혼인·이혼·별거·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·부양가족·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.
 ⑦ (생략)
-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 득산출세액(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)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

- <u>제4항까지에</u>
<u>⑦</u> <u>제5항까지</u>
<u>⑦</u> <u>제5항까지</u>
① <u>제5항까지</u>

항이	મી દ	다른	세액	공지	네 액	외	게	같
은	항	각	호의	기	부금	금을	합	한
금	백에	서 .	사업	소득	급	백을	계	산
할	때	필요	L경비	에	산약	입한	기	부
금		뺀 =	금액ㅇ] 3	천민	 논원을	<u>)</u>	초
과	하는	경-	우 그	. 초	과는	분에	대	해
서も	=	100 ર	분의	10	에	해딩	하	는
금	백을	추	가로	공자	ll 한	다.		

-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(이 하 "표준세액공제"라 한다)한 다.
- 1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, 제52조제8항 및 「조 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: 연 13만원
- 2. (생략)
- ① 제1항부터 <u>제9항까지의 규</u> <u>정</u>에 따른 공제를 "특별세액공 제"라 한다.
- ① (생략)

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저

<u>.</u>
<u> </u>
 .
1
 제7항
0 /처체되 가 O)
2. (현행과 같음)
<u> </u>
,
① (현행 제11항과 같음)
1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

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) ① 제59조의4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및 「조세특례제 한법」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 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 공제액,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 계좌세액공제액.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, 「조세특 례제한법」 제58조, 같은 법 제 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 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 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 출세액(제62조에 따라 원천장 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 준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

액의 산줄세액 초과 시의 적용
방법 등) ①
<u>제4항까지</u>
②

없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그 초 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 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 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 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 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 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.

③ (생략)

제81조의7(기부금영수증 발급· 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) ① 제34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, 제59 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 부금영수증[「법인세법」 제75 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 영수증(이하 "전자기부금영수 증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 하 "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다]을

<u>제59조의4제5항제2호</u>
제59
 조의4제5항
· ③ (현행과 같음)
제81조의7(기부금영수증 발급·
작성・보관 불성실 가산세) ①
<u>제59</u>
<u>제59</u> <u>조의4제5항</u>

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두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제175조(표본조사 등)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<u>제5</u> 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 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 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기부 금공제자"라 한다)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 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 다.

② · ③ (생 략)

	<u>.</u>
	1.•2. (현행과 같음)
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	175조(표본조사 등) ①
	제5
	<u></u> 9조의4제5항
	(한 전체가 가ბ)
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